



OTA 판결 불복

재심청구서 서면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항소를 조세심판국(Office of Tax Appeals, OTA)에 재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불복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근거해야 합니다.

1. 결정문 발행 전에 발생한 항소 절차상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항소가 공정하게 검토되지 못한 경우;
2. 결정문 발행 전 항소 절차 중에 발생한, 일반적인 주의로는 예방할 수 없었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건;
3. 당사자가 결정문 발급 전에 합리적으로 발견하고 제출할 수 없었던 항소와 관련된 새로 발견된 증거;
4. 결정문을 정당화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5. 결정문이 법률에 반하는 경우; 또는
6. OTA 항소 심리 또는 절차에서 법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에 근거하여 제기된 요청을 재심리 청구라고 하며, OTA 서면 결정문이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리 청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승인됩니다.

귀하 또는 세무 기관 중 한 쪽이 재심리 청구를 제기할 경우,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해당 청구는 원래 항소의 주심 패널 위원과 초기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두 명의 신규 패널 위원이 검토합니다. 이 새로운 패널은 청구를 심사하여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설명하는 서면 결정문을 발행합니다. 소액 사건 프로그램(Small Case Program) 항소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항소 절차에서 재심리 청구는 한 번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리 청구는 조세심판국 포털(Office of Tax Appeals Portal, OTAP)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방법으로 재심리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State of California, Office of Tax Appeals
P.O. Box 989880
West Sacramento, CA 95798-9880

팩스: (916) 492-2089

재심리가 승인될 경우, 귀하는 추가 문서 및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는 재심리를 승인한 패널이 검토합니다. 초기 항소와 마찬가지로 구두 심리를 요청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새로운 패널이 새로운 서면 결정문을 발행할 것입니다.

재심리 청구가 기각될 경우, 원 결정문과 재심리 청구에 대한 결정문이 모두 OTA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귀하의 항소는 최종 확정됩니다.

상급 법원에 소송 제기

OTA에 대한 항소는 행정 절차의 최종 단계입니다. OTA의 결정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청구가 포함되지 않은 항소의 경우, 세금을 납부한 후 세무 기관에 환급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 기관이 환급 청구를 기각할 경우, 환급 청구 기각일로부터 90일 이내에 California 상급법원에 세무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청구 거부가 포함된 항소의 경우, OTA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California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급법원의 사법 심사 기준은 '전면 재심리(de novo)' 심사이며, 이는 상급법원이 사건의 결정을 내릴 때 자체적 판단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